KBR 제21권 제3호 2017년 8월 http://dx.doi.org/10.17287/kbr.2017.21.3.207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가정 변경에 대한 실태분석

박 성 환*
박 선 영**

본 연구의 목적은 K-IFRS 도입을 전후하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회계처리 가정 요소(즉, 감가상각 단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적용 방식 및 내용연수)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주석기재 사항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K-IFRS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감가상각과 관련된 공시의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K-GAAP 재무제표와 K-IFRS 전환재무제표를 제공한 390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 후 기업들은 감가상각 단위를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시하였으며, 대체적인 감가상각 방법 적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용연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범위로 공시하여 정확한 내용연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평균적으로는 전체적인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 졌다고 조사되었다. 둘째, 기업 경영자는 정액법으로의 변경만으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감가상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실제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익성이 열악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IFRS 전환시점에서 재무구조 및 재무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실질을 정보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모범 주석사례를 제시하여 기업 정보공시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국제회계기준,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 단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서 기업에게 거래와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회계처리기준이 단일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기대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과 정보이용자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하에서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이 상이한 거래의 형태 및 상황 등에 대해 기업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시를 실행한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호영 등, 2012; 문현주, 2011; 신현걸 등, 2010; 박연희 등, 2013).

논문접수일: 2017. 01. 19. 1차 수정본 접수일: 2017. 04. 26. 게재확정일: 2017. 05. 12.
*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psh630@hanbat.ac.kr, 제 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박사(sypark13@gmail.com), 교신저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한국회계기준(K-GAAP)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사안 중 하나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회계처리이다(최종서, 공경태, 2014).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배진한 등, 2010). K-IFRS하에서 기업들이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단위,[1]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결정한다면 많은 기업이 K-GAAP에서와는 다른 회계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동주(2010)의 K-IFRS 조기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기존 K-GAAP하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선택 시 대부분의 기업이 세법상 인정되는 방법이나 내용연수를 선택함으로 인해 기업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K-IFRS 도입 후 기업 간 상이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K-IFRS 전면 도입 후 국내 상장기업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분석은 미진한 상황이다.[2] 본 연구는 12월 결산 상장사의 2010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전수 조사하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경영자의 회계선택결과를 실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도출되기 위한 가정사항인 감가상각 단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적용 방식 및 내용연수가 K-IFRS 도입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K-IFRS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 후 기업들은 감가상각 단위를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시하였으며, 감가상각 방법 적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업이 일괄적으로 기존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용연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범위로 공시하여 정확한 내용연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평균적으로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 졌다.

둘째, 경영자는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감가상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실제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익성이 열악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IFRS 전환시점에서 감가상각 관련 가정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은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보다는, 재무구조 및 재무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석공시에 있어서 기업별로 감가상각 관련 회계정보가 도출되기 위한 회계선택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제시되었어도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주석공시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의 실질을 정보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의 성실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

1) 여기서 감가상각 단위는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세부구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경우에 동체, 엔진, 항공기재 등이 감가상각 대상 단위가 된다.

2) 최종서,공경태(2014)는 IFRS 도입과 함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순이익과 순장부가액의 주가관련성을, 박성환,박선영(2016)은 IFRS 도입 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기업의 이익의 질을 분석하였으나 감가상각관련 회계선택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장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와, K-IFRS상의 재무제표와 K-GAAP상의 재무제표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 III장에서 실태분석에 따른 기업사례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서술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변화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감가상각 단위 구분과 구분된 자산별 내용연수 산정 및 경제적 실질에 맞는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이다. 따라서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K-GAAP 제 5호와 K-IFRS 제 1016호 규정상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감가상각단위

종전 K-GAAP 제5호에서는 감가상각 단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분류와 공시부분에서 유형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으며(문단39), 기업특성과 중요성 원칙을 반영하여 과목을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문단40). 이와 같이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반영되어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업은 세법에 따라 유형자산을 구분하고 세법이 정한 자산별 내용연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을 형태와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세법상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

한편 K-IFRS 제1016호에서는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한다고 규정한다(문단43). 예를 들면,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금융리스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문단44).

위와 같은 K-IFRS 제1016호와 K-GAAP 제5호의 상각범위에 대한 규정을 비교해보면 양 기준서 모두 유형자산 구분에 대해서 중요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형자산과목이 분리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K-IFRS 제1016호는 K-GAAP 제5호와 달리 중요성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단위의 별도구분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예를 들어서 엔진과 동체가 구분되어 감가상각을 달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K-GAAP 제5호에서는 다만 유형자산 표시를 중요성 원칙에 따라 세분화할 수도 있음을 제안할 뿐이며 K-IFRS 제1016호에서와 같이 항공기를 동체와 엔진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달리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K-IFRS 도입 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단위는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보람과 최기호(2011)는 기업들이 감가상각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기능별, 유형별, 특성별, 생산라인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세분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감가상각단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달리 결정되고 감가상각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단위 결정이 경영자의 중요한 판단이 됨을 시사한다.

2.1.2 내용연수

세법상의 내용연수 규정은 기술의 진보 등으로 인한 신형기계 등의 내용연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자산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 규정은 실제 내용연수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동주, 2010).

K-IFRS하에서 감가상각 단위가 세분화됨에 따라 내용연수는 세분화된 감가상각 단위별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K-GAAP하에서 세법상 감가상각 단위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검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K-IFRS하에서는 컨베이어벨트나 절단기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감가상각 단위를 구분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최보람과 최기호, 2011).

따라서 K-IFRS하에서 내용연수 결정은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과거 관행에 따라 감가상각 단위별로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그 적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K-IFRS 하에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야 하며 재검토한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6호의 문단51). 반면 K-GAAP하에서는 내용연수 변경을 포함한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서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추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문단15). 따라서 K-IFRS 하에서 경영자는 매년 내용연수에 대한 적정성을 개별자산의 중요성이나 개별기업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K-GAAP에 비하여 내용연수 변경을 빈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이승태, 2010).

2.1.3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건물과 구축물은 세법에서 정액법만을 인정하였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은 해당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반면, 그 외 다른 유형자산의 경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간주되는 정률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였다(법인세법 제 23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과세방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세금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과 괴리되는 상황이어도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K-IFRS 에서는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IFRS 하에서는 기업이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취득초기에 더 많이 소비되어 더 많은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야 한다면 정률법 등의 체감잔액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고 취득 초기에 경제적 효익의 소비가 더 많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액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유형자산 관련 주석의 공시 내용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IFRS 하에서 기업은 K-GAAP과는 상이한 상각범위와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이러

한 가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공시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K-IFRS 하에서 회계투명성과 정보유용성은 하락할 것이며,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이론 중 자발적 공시이론(Voluntary Disclosure)에서는 더 많은 공시를 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실질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추론한다(Watts and Zimmerman, 1990). 그리고 정보경제학의 '정치이론(Fineness Theorem)'에서는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더 유용한 정보라고 본다(Marshak and Radner, 1972). Hope and Thomas(2008)는 다국적 기업이 지리적으로 세분화된 이익정보(Geographic Earnings)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를 공시하는 부문에 비해 공시하지 않은 해외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경영진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부문에 대해서 전횡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Beest et al.(2009)은 IFRS 회계정보의 품질은 단순히 이익의 질(예를 들어, 이익조정, 재무제표 재작성 및 적시성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없으며, 주석사항, 비재무적인 정보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서란주와 조성표(2011)는 IFRS가 원칙중심의 기준으로 회계처리의 정당성 및 논리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IFRS 조기도입 기업 13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재무제표 양식 및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대한 근거나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둘째, 선택적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비교가능성의 개선을 위해 주석의 상세한 공시 등 표현의 충실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윤순석 등(2015)은 IFRS 최초 채택일에 간주원가 선택기업의 특성과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전환효과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시내용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IFRS 채택을 회계투명성 개선의 계기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무구조 및 재무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즉 회계투명성 개선을 표방하는 IFRS 채택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호영 등(2012)은 감가상각방법 선택과 내용연수 공시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즉, 내용연수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로 공시하지 않고 범위로 공시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내용연수를 동종 업종과 상이하게 선택하거나 매 연도 변경함으로 인해 이익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연수에 대한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주장하였다.

Ⅲ. 실태 파악 및 분석

3.1 분석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0년과 2011년의 유가증권상장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상장기업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는 TS2000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들 중 2010년과 2011년 두 연도에 걸쳐 계속 존속하는 기업에 관한 표본 669개의 기업-연도자료를 확보하였다. 여기서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표본 27개와 K-IFRS 조기도입 기업 34개를 제

〈표 1〉 표본 선정

구분	표본수
비금융업 전체표본 (2010~2011년 유가증권 상장기업)	669
12결산 이외 제외 및 결산월 변경 제외	27
자본잠식제외	3
조기도입기업 제외	34
자료미비 제외	215
총 표본 (2010년 K-GAAP과 K-IFRS 전환재무제표가 모두 존재하는 기업)	**390**

외시켰다. 이는 K-IFRS 의무도입 전·후의 실태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분석을 위한 자료가 미비한 표본 215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90개 기업-연도 자료를 확보하였다.

3.2 분석방법 및 조사대상 항목

본 연구의 목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가정사항인 감가상각 단위,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적용 방식 및 내용연수에 있어서 K-IFRS 도입 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K-IFRS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감가상각과 관련된 공시의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 2〉의 패널 A와 같이 유형자산과 관련된 재무정보와 감가상각 가정사항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K-IFRS 전환 후 유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PPE_TA)은 15.5%로 K-GAAP하에서 14.9%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액(CH_PPE)면으로는 평균 94억(중위수 12억)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CH_EQUIP)가 평균 204%(중위수 38.9%)로 가장 큰 변동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K-IFRS 전환 후 유형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81.3%의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변경(D_DEP)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3.8%의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증가(D_DEP_Inc)시킨 반면 73.7%의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평균적으로 유형자산 증가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DEP_NI)은 K-IFRS하에서 평균 35%(중위수 26%)로 K-GAAP하에서 63.7%(25.5%)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IFRS 도입을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K-IFRS 도입은 유형자산의 가치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주석 내용의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감가상각자산 단위수에 대하여 주석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73%의 기업은 K-GAAP과 동일한 감가상각자산 단위수(ITEM_SAME)를 유지한 반면, 감가상각자산 단위수를 증가시킨 기업(ITEM_INC)은 12.6%, 감소시킨 기업(ITEM_DEC)은 14.4%로 감가상각자산 단위수를 증가시킨 경우 보다는 감소시킨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K-GAAP에 비하여 K-IFRS 하에서 감가상각자산 단위수(ITEM_CH)에 있어 기업들은 평균 0.2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로 6개

증가시킨 기업이 있으며, 최소 3개 감소시킨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K-IFRS과 K-GAAP하에서 감가상각자산 단위수(ITEM_I, ITEM_G)는 각각 평균(중위수) 3.395(3)개, 3.418(3)개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K-IFRS 제1016호가 적용되면 기업들이 현재의 유형자산을 보다 세분화하여 감가상각 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다음은 감가상각 방법에서의 변화로 정률법 적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K-GAAP하에서 정률법을 적용한 기업은 60.5%이며, 기업당 평균적으로 2(중위수 3)개의 감가상각 단위에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GAAP하에서 기업들이 세금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정액법 보다는 정률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이들 기업들은 K-IFRS 도입 후 기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모두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일괄적인 정액법 변경에 대해 이호영 등(2012)은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은 오히려 K-IFRS 도입취지인 경제적 실질의 반영과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취득초기에 더 많이 소비된다면 기업은 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이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공시방식의 경우에, K-GAAP과 K-IFRS하에서 기업별로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감가상각자산 단위수(YPG, YPI)는 각각 평균(중위수) 1.779(2)개, 1.772(1)개로 평균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위수에 있어서는 K-IFRS하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경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의 총 평균(중위수) 내용연수는 K-GAAP하에서(YG_AVG) 10.87(8.93)년을 적용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K-IFRS하에서는 (YI_AVG) 11.760(10)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평균 내용연수(CHYR)를 0.8년 증가시킨 것을 의미하며, 표본기업 중 45.9%가 내용연수를 증가(CHYR_INC)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감가상각비 가정요소에서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IFRS 도입 후 기업들은 감가상각 단위를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시하였으며, 대체적인 감가상각 방법 적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률법에서 일괄적인 정액법으로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용연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범위로 공시하여 정확한 내용연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평균적으로는 전체적인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K-GAAP과 K-IFRS 하에서의 감가상각 자산별 비교를 통해 K-IFRS 도입 후 기계장치의 자산가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산업별로 기계장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감가상각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비교적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김상기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 대비 비제조업(건설, 도소매,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두 그룹간 상이한 의사결정 패턴을 보이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패널 B에서 제조업에 속한 기업은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이 K-GAAP(LPPE_LTA)과 K-IFRS(PPE_TA)하에서 각각 평균(중위수) 16.8%(13.8%)와 17.4% (15.4%)로 비제조업의 10.0%(5.8%)와 10.7% (5.8%)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비제조업의 경우 K-IFRS 전환 후 유형자산 비중이 10% 수준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16.8%에서 17.4%로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패널 A: 전체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값	중위수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PPE_TA	0.155	0.131	0.113	0.491	0.002
LPPE_LTA	0.149	0.123	0.117	0.596	0.002
BUILDING_PPE	0.486	0.475	0.274	0.992	0.000
STRUCTURE_PPE	0.055	0.023	0.089	0.564	0.000
EQUIP_PPE	0.265	0.231	0.241	0.828	0.000
SUPPLIES_PPE	0.069	0.015	0.138	0.913	0.000
CAR_PPE	0.018	0.004	0.050	0.357	0.000
OTHER_PPE	0.077	0.005	0.183	0.939	0.000
LBUILDING_LPPE	0.528	0.529	0.275	0.992	0.000
LSTRUCTURE_LPPE	0.061	0.030	0.091	0.567	0.000
LEQUIP_LPPE	0.246	0.202	0.235	0.872	0.000
LSUPPLIES_LPPE	0.067	0.019	0.131	0.866	0.000
LCAR_LPPE	0.017	0.004	0.044	0.305	0.000
LOTHER_LPPE	0.040	0.000	0.120	0.824	0.000
CH_PPE(십억)	9.406	1.292	75.446	476.979	(319.918)
CHR_PPE	0.155	0.053	0.300	1.590	(0.388)
CH_BUILDING	1.517	0.000	10.594	100.371	0.000
CH_STRUCTURE	0.247	0.000	1.223	9.637	0.000
CH_EQUIP	2.042	0.389	10.028	85.468	0.000
CH_SUPPLIES	0.361	0.011	1.114	9.344	0.000
CH_CAR	0.059	0.006	0.157	1.094	0.000
CH_OTHER	1.767	0.010	8.300	70.411	0.000
CH_DEP(십억)	(0.569)	(0.075)	43.673	407.155	(537.182)
CHR_DEP	(0.064)	(0.031)	0.269	2.420	(1.000)
D_DEP	0.813	1.000	0.391	1.000	0.000
D_DEP_Inc	0.238	0.000	0.427	1.000	0.000
DEP_NI	0.350	0.260	1.765	8.013	(11.710)
LDEP_LNI	0.637	0.255	1.708	11.932	(2.464)
DEP_SALE	0.025	0.019	0.025	0.151	0.001
LDEP_SALE	0.027	0.020	0.026	0.153	0.001
D_PPE_INC	0.733	1.000	0.443	1.000	0.000
ITEM_SAME	0.731	1.000	0.444	1.000	0.000
ITEM_INC	0.126	0.000	0.332	1.000	0.000
ITEM_DEC	0.144	0.000	0.351	1.000	0.000
ITEM_CH	(0.023)	0.000	0.885	6.000	(3.000)
ITEM_I	3.395	3.000	1.572	9.000	1.000
ITEM_G	3.418	3.000	1.527	8.000	1.000
DM1	0.605	1.000	0.489	1.000	0.000
DM_CH	2.046	3.000	1.880	8.000	(1.000)
YPG	1.779	2.000	1.647	7.000	0.000
YPI	1.772	1.000	1.631	8.000	0.000
YG_AVG	10.875	8.938	6.598	45.000	3.500
YI_AVG	11.760	10.000	7.567	50.000	4.000
Y_INC	0.979	1.000	1.229	5.000	0.000
Y_SAME	1.341	1.000	1.524	8.000	0.000
Y_DEC	0.569	0.000	0.988	5.000	0.000
CHYRD	0.723	1.000	0.448	1.000	0.000
CHYR	0.885	0.000	4.621	30.000	(21.000)
CHYR_INC	0.459	0.000	0.499	1.000	0.000

변수설명: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형자산에는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대상 투자부동산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즉 건물은 유형자산의 건물과 투자부동산의 건물을 합산한 것이며, 기타유형자산에는 기타투자부동산을 합산한 것임.

** PPE_TA (LPPE_LTA) =(2010년도IFRS(K-GAAP)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감가상각대상 투자부동산 (이하 유형자산)) / IFRS(K-GAAP) 총자산; BUILDING_PPE(LBUILDING_LPPE)=(IFRS (K-GAAP) 건물+투자부동산건물) / IFRS (K-GAAP) 유형자산; STRUCTURE_PPE (LSTRUCTURE_LPPE)= (IFRS (K-GAAP) 구축물) / IFRS (K-GAAP) 유형자산; EQUIP_PPE (LEQUIP_LPPE)= (IFRS (K-GAAP) 기계장치) / IFRS (K-GAAP) 유형자산; SUPPLIES_PPE (LSUPPLIES_LPPE)= (IFRS (K-GAAP) 비품) / IFRS (K-GAAP) 유형자산; CAR_PPE (LCAR_LPPE)= (IFRS (K-GAAP) 차량) / IFRS (K-GAAP) 유형자산; OTHER_PPE (LOTHER_LPPE)= (IFRS (K-GAAP) 기타유형자산) / IFRS (K-GAAP) 유형자산; CH_PPE=유형자산변경금액 CHR_PPE=유형자산변경금액/K-GAAP유형자산; CH_BUILDING=절대값(건물변경금액/유형자산변경금액); CH_STRUCTURE = 절대값(구축물변경금액/유형자산변경금액); CH_EQUIP= 절대값(기계장치변경금액/유형자산변경금액); CH_SUPPLIES=절대값(비품변경금액/유형자산변경금액); CH_CAR= 절대값(차량변경금액/유형자산변경금액); CH_OTHER= 절대값(기타유형자산변경금액/유형자산변경금액); CH_DEP=감가상각비변경금액(현금흐름표상); CHR_DEP=감가상각비변경금액/K-GAAP감가상각비 D_DEP=감가상각비변경이면 1; D_DEP_Inc=감가상각비변경)0이면 1, 아니면 0; DEP_NI (LDEP_NI)=IFRS (K-GAAP) 감가상각비/IFRS(K-GAAP)당기순이익; DEP_SALE (LDEP_SALE)= IFRS(K-GAAP)감가상각비/IFRS(K-GAAP)매출액; D_PPE_INC= 유형자산변경)0이면 1, 아니면 0; ITEM_SAME=감가상각자산 단위수 동일; ITEM_INC=감가상각자산 단위수 증가; ITEM_DEC=감가상각자산 단위수 감소; ITEM_CH=IFRS 감가상각자산 단위수 - K-GAAP 감가상각자산 단위수; ITEM_I (ITEM_G)= IFRS(K-GAAP) 감가상각자산 단위수; DM1=K-GAAP하에서 정률법 적용을 IFRS하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는 1, 아니면 0; DM_CH=정률법변경 감가상각자산 단위수; YPG (YPI) =K-GAAP(IFRS)상 내용연수를 포인트로 사용한 감가상각자산 단위수; YG_AVG(YI_AVG)= K-GAAP(IFRS)상 계정과목들의 총 평균 내용연수; Y_INC=내용연수가 증가한 감가상각자산 단위수; Y_SAME=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 단위수; Y_DEC=내용연수가 감소한 감가상각자산 단위수; CHYR=IFRS 계정과목들의 총 평균 내용연수 - K-GAAP 계정과목들의 총 평균 내용연수; CHYRD=내용연수가 변경한 경우는 1, 아니면 0; CHYR_INC=내용연수변경(CHYRD))0 이면 1, 아니면 0.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계속)

패널 B: 제조업 대비 비제조업의 기술통계량 비교*

	제조업 (n=287)		비제조업 (n=103)		평균값 비교 (t-value)	중위수 비교 (z-value)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PPE_TA	0.174	0.154	0.107	0.058	5.080***	7.114***
LPPE_LTA	0.168	0.138	0.100	0.058	5.460***	6.841***
BUILDING_PPE	0.460	0.449	0.551	0.644	-2.450**	-2.689***
STRUCTURE_PPE	0.060	0.033	0.041	0.002	1.720*	5.682***
EQUIP_PPE	0.327	0.309	0.108	0.003	9.520***	9.442***
SUPPLIES_PPE	0.051	0.013	0.117	0.022	-3.230***	-2.770***
CAR_PPE	0.015	0.005	0.027	0.003	-1.820*	1.340
OTHER_PPE	0.053	0.004	0.139	0.006	-3.180***	-1.479
LBUILDING_LPPE	0.508	0.507	0.578	0.665	-1.940*	-2.664***
LSTRUCTURE_LPPE	0.067	0.041	0.046	0.007	1.790*	5.818***
LEQUIP_LPPE	0.291	0.258	0.131	0.008	6.210***	8.065***
LSUPPLIES_LPPE	0.047	0.016	0.117	0.026	-3.490***	-2.684***
LCAR_LPPE	0.012	0.004	0.029	0.003	-2.540**	1.147
LOTHER_LPPE	0.031	0.000	0.064	0.000	-1.950*	-0.211
CH_PPE(십억)	6.917	1.867	15.742	0.190	-0.920	3.959***
CHR_PPE	0.154	0.073	0.159	0.017	-0.130	2.976***
CH_BUILDING	1.240	0.000	2.224	0.000	-0.700	0.237
CH_STRUCTURE	0.197	0.000	0.374	0.000	-1.130	1.321
CH_EQUIP	1.624	0.584	3.107	0.000	-1.090	6.053***
CH_SUPPLIES	0.286	0.015	0.552	0.006	-1.880*	-0.625
CH_CAR	0.053	0.008	0.076	0.000	-1.200	1.373
CH_OTHER	1.376	0.010	2.762	0.000	-1.340	-0.574
CH_DEP(십억)	-1.713	-0.141	2.344	-0.007	-0.790	-1.903*
CHR_DEP	-0.076	-0.045	-0.034	-0.016	-1.140	-1.252
D_DEP	0.843	1.000	0.736	1.000	2.240**	2.422**
D_DEP_Inc	0.239	0.000	0.236	0.000	0.060	0.060
DEP_NI	0.387	0.310	0.254	0.097	0.720	4.348***
LDEP_LNI	0.729	0.316	0.403	0.097	1.840*	4.827***
DEP_SALE	0.027	0.021	0.022	0.012	1.260	4.753***
LDEP_SALE	0.030	0.023	0.020	0.010	3.270***	6.668***
D_PPE_INC	0.775	1.000	0.627	1.000	2.810***	2.964***
ITEM_SAME	0.750	1.000	0.682	1.000	1.320	1.364
ITEM_INC	0.114	0.000	0.155	0.000	-1.020	-1.077
ITEM_DEC	0.136	0.000	0.164	0.000	-0.680	-0.706
ITEM_CH	-0.029	0.000	-0.009	0.000	-0.170	-0.164
ITEM_I	3.418	3.000	3.336	3.000	0.440	1.014
ITEM_G	3.446	4.000	3.345	3.000	0.580	0.758
DM1	0.607	1.000	0.600	1.000	0.130	0.129
DM_CH	2.075	3.000	1.973	2.000	0.480	0.533
YPG	1.718	1.000	1.936	2.000	-1.210	-1.392
YPI	1.682	1.000	2.000	2.000	-1.690*	-1.694*
YG_AVG	10.993	9.167	10.573	7.667	0.540	1.578
YI_AVG	11.884	10.208	11.444	7.583	0.480	1.951*
Y_INC	1.007	1.000	0.909	0.000	0.740	0.530
Y_SAME	1.343	1.000	1.336	1.000	0.040	-0.069
Y_DEC	0.568	0.000	0.573	0.000	-0.040	-0.121
CHYRD	0.725	1.000	0.718	1.000	0.130	0.135

* 비제조업은 건설, 도소매, 서비스업을 포함함.

** 변수정의는 〈표 2〉 참조.

증가한 것이다. 즉 제조업에서 유형자산은 K-IFRS 도입시 18억(중간값) 증가(CH_PPE)로 K-GAAP 대비 7.3% 증가(CHR_PPE)하여 비제조업의 1.9억, 1.7% 증가에 비하여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분류별로 볼 때, 제조업의 기계장치 비중은 K-GAAP(LEQUIP_LPPE)과 K-IFRS (EQUIP_ PPE)하에서 각각 29.1%와 32.7%로 비제조업의 13.1%와 10.8%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CH_EQUIP 중위수값 차이는 두 그룹간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K-IFRS 전환시 기계장치가 유형자산의 유의한 변동을 발생시키는 항목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K-GAAP하에서 72.9%(31.6%)(LDEP_LNI)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K-IFRS 도입 후에는 38.7%(31%)(DEP_NI)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에서 감가상각비가 변경된 기업(D_DEP)은 84.3%로 비제조업 73.6%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연수 제시방법에 있어서 제조업의 경우는 K-IFRS 도입 후 포인트로 제시(YPI)하는 경우보다 범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내용연수(YI_AVG) 또한 10.2년으로 비제조업의 7.6년에 비하여 10%수준에서 유의하게 긴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가분석을 요약해 보면, 제조업에 속한 기업은 대체적으로 IFRS 도입시 감가상각법의 변경이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K-IFRS 전환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히, 기계장치의 자산가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패널 A 전체 표본에서의 패턴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한 기업과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경우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G4에 속하는 93개(23.9%)의 기업이 기존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은 당기와 미래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유인이 가장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더라도 감가상각 내용연수 후기에 정률법에 비해 정액법이 높은 감가상각비를 보고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기업은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액법 변경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를 회피하고자 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3] 따라서 〈표 4〉에서는 이들 기업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가정요소 변경에 따른 표본구분

		내용연수 증가 여부	
		감소,CHYR_INC=0 (n=211, 54.1%)	증가, CHYR_INC=1 (n=179, 45.9%)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여부	변경없음, DM1=0 (n=154, 39.5%)	G1.DM0YR0=1 (n=68, 17.4%)	G2. DM0YR1=1 (n=86. 22.0%)
	변경, DM1=1 (n=236, 60.5%)	G3.DM1YR0=1 (n=143, 36.7%)	**G4.DM1YR1=1 (n=93, 23.9%)**

3) 또한 K-IFRS 최초 도입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간주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기존의 K-GAAP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패널 A는 G4 기업 대비 나머지 대조그룹 기업(G1~G3)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시한 것이다. G4에 속한 기업의 총자산대비 유형자산 비율은 K-GAAP(LPPE_LTA)하에서 평균 12.9%(11.4%)로 대조그룹에 비하여 낮은 비중을 보였지만, K-IFRS(PPE_TA)도입후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G4의 유형자산은 K-IFRS 도입후 평균(중위수) 200억(28억)(CH_PPE)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감가상각비의 감소로 초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G4는 K-GAAP대비 감가상각비를 15.6%(13.4%) 감소(CHR_DEP)시킨 반면 대조그룹은 3.6%(1.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G4의 91.4% 기업에서 유형자산의 증가(D_PPE_INC)를 보여주고 있다.

감가상각 자산별 비중을 살펴보면, G4는 K-GAAP하에서 기계장치 비중(LEQUIP_LPPE)이 대조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지만, K-IFRS 도입후에는 이러한 비중(EQUIP_PPE)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4가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여 K-GAAP하에서 높은 감가상각비용과 낮은 순자산가액을 기록하였다면, K-IFRS 도입후 정액법변경과 내용연수를 증가시켜 기계장치의 자산가액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감가상각 가정을 살펴보면 첫째, 감가상각자산 단위수 변동에 있어, G4에 속한 기업 중 23.7% 기업이 감가상각자산 단위수를 감소(ITEM_DEC)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조그룹에서 11.4%의 기업이 감가상각 자산 단위수를 감소시킨 것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G4는 K-GAAP 및 K-IFRS하에서 평균 4개의 감가상각자산 단위수(ITEM_I, ITEM_G)로 대조그룹의 3개에 비하여 더 많은 감가상각자산 단위수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가상각 방법의 경우 K-GAAP 하에서 G4는 평균(중위수) 3.4(3)개의 감가상각 단위에 정률법을 적용(DM_CH)하여 대조그룹이 1.6(0)개인 것에 비하여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4 기업이 K-GAAP하에서 세금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연수 표시에 있어서 G4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YPG)하는 감가상각자산 단위수가 평균 2개로 대조그룹의 1.6개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G4의 감가상각 자산의 총평균 내용연수는 K-IFRS(YI_AVG) 하에서 12.5(12.3)년으로 K-GAAP(YG_AVG)상 9.7(8.8)년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패널 B는 정액법으로 변경한 기업 중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기업 G4 대비 내용연수를 감소시킨 기업 G3을 비교한 것이다. 총자산대비 유형자산 비율(PPE_TA)은 G4 기업이 G3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K-IFRS 도입후 G4의 감가상각비가 감소(CH_DEP)하여 유형자산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G4의 경우 K-GAAP하에서(LDEP_LNI) 92.9%(27.5%)로 G3의 41.6%(20.3%)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매출액대비 감가상각비(LDEP_SALE)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K-IFRS 도입 후에는 G4가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킴으로써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G4에 속하는 기업은 수익성이 열악한 기업으로 K-IFRS 전환시 감가상각 가정을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가장 강한 기업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감가상각 가정을 살펴보면, 감가상각 단위 수에 있어서 G3는 8.4% 만이 감가상각 단위 수를 감소시킨 반면 G4는 23.7%의 기업이 감가상각 단위 수를 감소(ITEM_DEC)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내용연수의 경우에 G4는 K-GAAP(YG_

〈표 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가정요소의 변경에 따른 유형별 기술통계량 분석

패널 A: 감가상각 가정요소를 모두 변경한 기업(DM1YR1, n =93)의 기술통계량

	DM1YR1=1 (n=93)		DM1YR1=0 (n=297)		평균값 비교 (t-value)	중위수 비교 (z-value)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PPE_TA	0.145	0.122	0.159	0.134	-1.140	-0.566
LPPE_LTA	0.129	0.114	0.155	0.126	-2.340**	-1.013
BUILDING_PPE	0	0	0	0	1.470	1.535
STRUCTURE_PPE	0.052	0.022	0.056	0.023	-0.370	0.221
EQUIP_PPE	0.240	0.170	0.273	0.256	-1.210	-0.941
SUPPLIES_PPE	0.058	0.014	0.073	0.016	-1.130	-0.627
CAR_PPE	0.019	0.004	0.018	0.004	0.100	0.345
OTHER_PPE	0.081	0.009	0.076	0.003	0.250	0.667
LBUILDING_LPPE	0.588	0.616	0.509	0.505	2.540**	2.406**
LSTRUCTURE_LPPE	0.064	0.031	0.060	0.029	0.360	0.421
LEQUIP_LPPE	0.198	0.128	0.261	0.218	-2.410**	-1.876*
LSUPPLIES_LPPE	0.056	0.012	0.070	0.020	-0.980	-1.493
LCAR_LPPE	0.018	0.005	0.016	0.004	0.290	0.701
LOTHER_LPPE	0.052	0.000	0.037	0.000	0.980	2.354**
CH_PPE(십억)	20.642	2.808	5.888	0.559	1.690*	4.160***
CHR_PPE	0.225	0.149	0.133	0.033	2.450**	4.955***
CH_BUILDING	1.771	0.000	1.438	0.000	0.250	1.589
CH_STRUCTURE	0.217	0.000	0.256	0.000	-0.290	1.755*
CH_EQUIP	1.802	0.550	2.118	0.322	-0.280	2.281**
CH_SUPPLIES	0.434	0.080	0.338	0.000	0.620	2.471**
CH_CAR	0.060	0.017	0.059	0.002	0.040	4.084***
CH_OTHER	1.318	0.073	1.907	0.000	-0.640	1.701*
CH_DEP(십억)	-3.667	-0.231	0.401	-0.030	-0.540	-2.409**
CHR_DEP	-0.156	-0.134	-0.036	-0.015	-4.260***	-3.834***
D_DEP	0.946	1.000	0.771	1.000	5.170***	3.774***
D_DEP_Inc	0.226	0.000	0.242	0.000	-0.330	-0.327
DEP_NI	0.523	0.262	0.295	0.259	1.050	0.307
LDEP_LNI	0.929	0.275	0.545	0.246	1.510	1.171
DEP_SALE	0.024	0.018	0.026	0.020	-0.610	-0.842
LDEP_SALE	0.029	0.020	0.026	0.020	1.040	0.517
D_PPE_INC	0.914	1.000	0.677	1.000	5.940***	4.508***
ITEM_SAME	0.613	1.000	0.768	1.000	-2.740***	-2.932***
ITEM_INC	0.151	0.000	0.118	0.000	0.780	0.828
ITEM_DEC	0.237	0.000	0.114	0.000	2.540**	2.925***
ITEM_CH	-0.151	0.000	0.017	0.000	-1.450	-1.516
ITEM_I	4.161	4.000	3.155	3.000	6.370***	5.765***
ITEM_G	4.312	4.000	3.138	3.000	7.790***	6.823***
DM1	1.000	1.000	0.481	0.000	17.850***	8.915***
DM_CH	3.452	3.000	1.606	0.000	11.380***	8.489***
YPG	2.344	2.000	1.603	1.000	3.570***	3.530***
YPI	2.215	3.000	1.633	1.000	3.060***	3.277***
YG_AVG	9.738	8.875	11.231	9.000	-2.400**	-1.064
YI_AVG	12.576	12.333	11.504	8.833	1.440	3.218***
Y_INC	1.828	2.000	0.714	0.000	7.570***	8.323***
Y_SAME	1.409	1.000	1.320	1.000	0.530	1.193
Y_DEC	0.301	0.000	0.653	0.000	-4.170***	-2.401**
CHYRD	1.000	1.000	0.636	1.000	13.010***	6.829***
CHYR	2.838	1.786	0.274	0.000	5.770***	9.313***
CHYR_INC	1.000	1.000	0.290	0.000	26.950***	11.982***

* 변수정의는 〈표 2〉 참조.

〈표 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가정요소의 변경에 따른 유형별 기술통계량 분석 (계속)

패널 B: 정액법으로 변경한 기업(DM1=1, n=236) 중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기업(CHYR_INC=1) 대비 감소시킨 기업(CHYR_INC=0)의 기술통계량 비교

	CHYR_INC=1 (n=93)		CHYR_INC=0 (n=143)		평균값 비교 (t-value)	중위수 비교 (z-value)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PPE_TA	0.145	0.122	0.122	0.111	1.800*	1.649*
LPPE_LTA	0.129	0.114	0.112	0.103	1.570	1.647*
BUILDING_PPE	0.523	0.497	0.527	0.514	-0.130	-0.152
STRUCTURE_PPE	0.052	0.022	0.051	0.023	0.090	0.603
EQUIP_PPE	0.240	0.170	0.218	0.151	0.730	0.789
SUPPLIES_PPE	0.058	0.014	0.095	0.025	-2.090**	-1.620
CAR_PPE	0.019	0.004	0.024	0.006	-0.780	-1.491
OTHER_PPE	0.081	0.009	0.072	0.001	0.400	0.959
LBUILDING_LPPE	0.588	0.616	0.585	0.614	0.100	0.015
LSTRUCTURE_LPPE	0.064	0.031	0.057	0.027	0.550	0.849
LEQUIP_LPPE	0.198	0.128	0.185	0.128	0.500	0.604
LSUPPLIES_LPPE	0.056	0.012	0.083	0.024	-1.530	-1.713*
LCAR_LPPE	0.018	0.005	0.023	0.005	-0.650	-0.856
LOTHER_LPPE	0.052	0.000	0.042	0.000	0.550	2.344**
CH_PPE(십억)	20.642	2.808	6.036	1.814	1.820*	1.920*
CHR_PPE	0.225	0.149	0.195	0.101	0.720	1.318
CH_BUILDING	1.771	0.000	0.260	0.000	1.290	1.664*
CH_STRUCTURE	0.217	0.000	0.147	0.000	0.500	2.055**
CH_EQUIP	1.802	0.550	1.156	0.507	0.600	0.921
CH_SUPPLIES	0.434	0.080	0.326	0.069	0.720	-0.464
CH_CAR	0.060	0.017	0.077	0.018	-0.820	-0.211
CH_OTHER	1.318	0.073	1.175	0.010	0.150	1.423
CH_DEP(십억)	-3.667	-0.231	0.771	-0.069	-0.590	-2.698***
CHR_DEP	-0.156	-0.134	-0.020	-0.043	-4.240***	-3.567***
D_DEP	0.946	1.000	0.923	1.000	0.710	0.688
D_DEP_Inc	0.226	0.000	0.336	0.000	-1.860*	-1.808*
DEP_NI	0.523	0.262	0.136	0.229	1.630	1.397
LDEP_LNI	0.929	0.275	0.416	0.203	1.990**	2.045**
DEP_SALE	0.024	0.018	0.021	0.018	0.890	0.442
LDEP_SALE	0.029	0.020	0.022	0.019	2.150**	1.636
D_PPE_INC	0.914	1.000	0.867	1.000	1.150	1.101
ITEM_SAME	0.613	1.000	0.825	1.000	-3.540***	-3.631***
ITEM_INC	0.151	0.000	0.091	0.000	1.340	1.402
ITEM_DEC	0.237	0.000	0.084	0.000	3.050***	3.255***
ITEM_CH	-0.151	0.000	-0.007	0.000	-1.190	-1.412
ITEM_I	4.161	4.000	3.671	3.000	2.880***	3.292***
ITEM_G	4.312	4.000	3.678	4.000	3.930***	4.414***
DM1	3.452	3.000	3.343	3.000	0.710	1.133
DM_CH	2.344	2.000	2.140	2.000	0.880	0.836
YPG	2.215	3.000	2.343	2.000	-0.580	-0.410
YPI	9.738	8.875	8.611	6.667	1.900*	1.884*
YG_AVG	12.576	12.333	7.633	6.250	7.660***	7.387***
YI_AVG	1.828	2.000	0.175	0.000	11.810***	11.543***
Y_INC	1.409	1.000	2.580	3.000	-6.470***	-6.083***
Y_SAME	0.301	0.000	0.552	0.000	-2.440**	-1.035
Y_DEC	1.000	1.000	0.371	0.000	15.530***	9.705***
CHYRD	2.838	1.786	-0.978	0.000	9.600***	13.349***

* 변수정의는 〈표 2〉 참조.

AVG)과 K-IFRS(YI_AVG) 하에서 모두 G3에 비하여 높은 평균 내용연수를 나타냈다. 또한 G3는 K-IFRS 도입으로 내용연수를 평균 0.9년 감소(CHYRD)시킨 반면 G4는 평균 2.8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B에서 G3 기업과 비교해본 결과, 기업 경영자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충분히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감가상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 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공시가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3 기업 사례

본 장에서는 K-IFRS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정 기업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3.3.1 D공업

D공업주식회사는 농업용 기계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사업으로 1947년에 설립되었으며, 트랙터 등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1975년에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1년 기말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의 회사 지분율은 약 30.78%이다.

D공업의 유형자산과 관련한 2010년 K-GAAP과 K-IFRS 전환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주석사항을 정리하여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감가상각 단위에 있어서 D공업은 기존 7개의 상각단위에서 K-IFRS 도입후 5개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가상각 단위 구분에 있어서 K-GAAP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반면 K-IFRS 하에서는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에 있어서 K-GAAP하에서는 "건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그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에 의하여 계상"하여 5개의 감가상각 대상 단위에서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K-IFRS하에서는 "자산별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명시하며 기존 정률법 적용에서 정액법으로 모두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가상각 가정에 대한 회계추정 변경에 있어서 K-GAAP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반면 K-IFRS 하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명시하여 매년 회계추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토지에 대한 간주원가 적용과 관련하여 D공업은 K-IFRS 하에서 "일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간주원가를 적용한 일부 토지 및 건물 등의 전환일의 공정가치는 215,335,179천원이며 해당자산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은 118,344,350천원입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산에 대한 전환일의 간주원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상 D공업의 유형자산 관련 가정에 대한 주석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기업은 기존 자산에 대한 정률법 적용을 모두 정액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각 상각단위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모두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는 15~30년에서 35~55년으로 크게 증가시켰으며, 기계장치 또한 정률법에서 정액법적용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내용연수도 기존 8년에서 10~20년으로 구체적인 수치제공이 아닌 범위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고 있다(이러한 변화로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35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가상각 단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7개 상각대상 단위별로 내용연수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K-IFRS 도입 이후에는 5개 단위로 축소되었으며 종전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집기 비품'을 '기타유형자산'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세부정보가 생략되는 경향을 보였다.

나아가 토지 및 건물의 공정가치를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적용하여 유형자산 가치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최대화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용인지, 간주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나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대한 정보 누락과 축약적인 정보제공은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주석의 상세한 공시 등 표현의 충실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4)]

다음은 이러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가정의 변동이 주요한 재무제표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은 K-IFRS 전환 후 96%가 증가하였는데, 주요한 증가 원인은 기계장치가 355%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자

〈표 5〉 D공업의 K-GAAP과 K-IFRS하에서의 유형자산 감가상각 가정요소별 비교

유형자산 감가상각 요소	K-GAAP	K-IFRS
감가상각단위 수	7	5
정률법 적용 감가상각 단위수	5	0
유형자산 관련 주석 단어 수(표 제외)	173	176
감가상각 단위 자산별 추정 내용연수	**K-GAAP**	**K-IFRS**
건물	15~30년	35-55년
건물부속설비	15~30년	30년
구축물	15~30년	10-40년
기계장치	8년	10-20년
차량운반구	4년	X
공구와 기구	4년	X
집기비품	4년	X
기타유형자산	X	4-5년

4) D공업의 K-IFRS 전환 후 유형자산 관련 의사결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2011년 이후 관련 주석공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감가상각 대상 감가상각자산 단위수와 일괄적인 정액법 적용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계정과목별 내용연수는 2014년에 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물은 2011년에 35~5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는데 2014년부터 4~5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건물 부속설비는 30년에서 5~27년으로, 구축물은 10~40년에서 10~31년으로, 기계장치는 10~20년에서 10~1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2011년 전환시점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과목별 내용연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K-GAAP하에서의 내용연수보다는 여전히 긴 내용연수이다. (참고로 관심기간 중 D공업의 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으로 변화가 없었다.)

산의 증가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내용연수가 8년에서 10~20년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증가는 총자산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부채비율의 감소, 즉 자산대비 3% 감소, 자본대비 7%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81%증가, 감가상각비는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수익률(ROA)은 0.4%에서 0.5%로 향상되었으며,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K-GAAP하에서 12.7배로 부담이 상당한 반면, K-IFRS 전환을 통해 6.6배로 대폭 경감시키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가정 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D공업과 같이 수익성이 열악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K-IFRS 전환시점에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은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계기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재무구조 및 재무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D공업의 K-GAAP과 K-IFRS하에서의 주요 재무제표 수치 비교

재무제표상 주요 수치 (단위: 백만원)	K-GAAP	K-IFRS	증감률
총자산	316,011	463,413	47%
유형자산	117,646	210,057	79%
토지(1)	55,084	90,876	65%
건물	24,929	32,106	29%
건물부속설비	3,332	3,353	1%
구축물	2,083	3,316	59%
기계장치	11,443	52,111	355%
차량운반구	1,032	1,472	43%
공구와기구	15,276	21,875	43%
집기비품	873	1,352	55%
건설중인자산(2)	3,595	3,595	0%
감가상각대상자산(유형자산 - (1)-(2))	58,967	115,586	96%
부채총계	177,215	251,929	42%
자본	138,796	211,484	52%
당기순이익 2010	1,297	2,348	81%
감가상각비(현금흐름표)	16,523	15,575	-6%
비율분석	**K-GAAP**	**K-IFRS**	**증감률**
부채비율(부채/자산)	0.561	0.544	-3%
부채비율(부채/자본)	1.277	1.191	-7%
총자산수익률(ROA)	0.004	0.005	23%
감가상각자산비율(감가상각대상자산/자산)	0.187	0.249	34%
감가상각비비율(감가상각비/당기순이익)	12.742	6.633	-48%

Ⅳ. 결 론

본 연구는 K-IFRS와 K-GAAP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사안 중 하나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회계처리 가정 요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K-GAAP 하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 선택 시 대부분의 기업이 세법상 인정되는 방법이나 내용연수를 선택함으로 인해 기업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K-IFRS하에서 기업들은 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단위,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결정하도록 요구됨에 따라 기업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선택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과 이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나 성실한 정보공시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도출되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가정사항인 감가상각 단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적용 방식 및 내용연수에 있어서 K-IFRS 도입 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주석기재 사항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감가상각 관련 가정의 변화가 재무제표 주요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제시하여 주석 공시의 개선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K-GAAP 재무제표와 K-IFRS 전환재무제표를 제공한 390개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 후 기업들은 감가상각 단위를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시하였으며, 대체적인 감가상각 방법 적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률법에서 일괄적인 정액법으로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용연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범위로 공시하여 정확한 내용연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평균적으로는 전체적인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 졌다.

둘째, 기업 경영자는 정률법으로의 변경만으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감가상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실제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익성이 열악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IFRS 전환시점에서 감가상각 관련 가정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은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보다는, 재무구조 및 재무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5)]

한편, 기업별로 감가상각 관련 회계정보가 도출되기 위한 회계선택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제시되었어도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모범 주석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의 실질을 정보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보공시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실태 분석결과는 향후 국내 상장사의 감가상각관련 회계적 변화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K-GAAP하에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경영자의 선택이 K-IFRS 도입 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기업을 추가하여 심층분석을 한다면 향후 주석 공시의 개선방향 및 시사점

5) 이러한 결과는 박성환,박선영(2016)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IFRS의 도입 이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시에 변경하여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의 경우에 이익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을 얻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원칙중심의 K-IFRS 취지에 부합하여 실무에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계선택이 이루어지는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개념체계 중심의 회계교육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0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K-IFRS 기준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기에는 연구시점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며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회계변경의 질적인 차이를 유발 할 수 있는 기업의 상황적 특성, 예를 들어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기타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관련 회계의사결정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 다양한 회계처리항목에 대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K-IFRS 하에서 경영자의 재량적인 의사결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Beest, F. V., G. Braam, and S. Boelens(2009),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measuring qualitative characteristics," *Nice Center for Economics(NICE)*, 09-108. Working Paper.

Choi, B. R., and Choi, K. H.(2011), "A case on the change of useful life of fixed assets under K-IFR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0(2), 423-444. [printed in Korean]

Choi, J. S., and Gong, K. T.(2014),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numbers associated with depreciation policy change subsequent to the K-IFRS adop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39(6), 267-302. [printed in Korean]

Hope and Thomas(2008), "Managerial empire building and firm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91-626

Lee, S. T.(2010), "A case study on the accounting methods of an early adoption of K-IFRS reported in 2009,"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31-256. [printed in Korean]

Lee, D. J.(2010), "A study on improvement schemes of tax accounting on tangible assets fo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University of Seoul, Science in Taxation*, Master thesis. [printed in Korean]

Lee, H. Y., Kang, M. J., Jahang, G. J., and Lee, H.S.(2012), "An analysis on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fter IFRS adop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1(3), 307-342. [printed in Korean]

Marshak, J., and R. Radner(1972), "Economic theory of teams," *Yale University Press*.

Moon, H. J.(2011), "A comparison of earnings quality under Korean GAAP versus IFR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143-162. [printed in Korean]

Pae, J. H., Park, S. H., and Song, Y. H.(2010), "Asset revaluations to tide over financial difficulties : A case study of S company," *Korean Accounting Journal*, 19(3), 201-220. [printed in Korean]

Park, S. H., and Park, S. Y.(2016), "The effect of IFRS adoption on the selection of depreciation method and useful Llfe : Focusing on the firm"s earnings quality," *Korean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68(8), 21-41. [printed in Korean]

Park, Y. H., Cho, S. H., and Park, S. J.(2013), "A case study on implementing K-IFRS: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a public-sector,"

Korea Business Review, 17(1), 1-39. [printed in Korean]

Seo, R. J., and Cho, S. P.(2011), "A case study on application and disclosure of the principle-based standards in K-IFRS adoption companies," *Korean Accounting Journal*, 20(3), 393-426. [printed in Korean]

Shin, H. G., Lim, T. K., Jeong, S. W., and Han, H.S.(2010), "Implication from the changes of the major account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ies which adopted the K-IFRS early," *Korea Business Review*, 14(2), 129-145. [printed in Korean]

Yoon, S. S., Kim, H. J., and Park, M. K.(2015),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choosing the deemed cost option on the first-time adoption date of IFRS and their post-adoption financial statement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4(5), 1-34. [printed in Korean]

Watts, R. and J. Zimmerman(1990), "Positive accounting theory: a ten year perspective," *The Accounting Review* 65, 131-156.

국내참고문헌

문현주(2011), "회계이익의 질적 비교-한국 K-GAAP 대 IFRS," **경영교육연구**, 143-162.

배진한, 박성화, 송영효(2010), "재무적 곤경의 타개책으로서의 자산재평가: S사 사례," **회계저널**, 19(3), 201-220.

박성환, 박선영(2016), "IFRS 도입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익의 질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68(8), 21-41.

박연희, 조석희, 박성진(2013),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사례 - A 공단을 중심으로," **경영연구**, 17(1), 1-39.

서란주, 조성표(2011),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에서 원칙중심기준의 적용 및 공시에 대한 사례 연구," **회계저널**, 20(3), 393-426.

신현걸, 임태균, 정석우, 한형성(20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재무제표의 주요계정에 나타난 변화와 시사점," **경영연구**, 14(2), 129-145.

이승태(20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조기도입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경영교육연구**, 231-256.

이동주(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유형자산 세무회계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호영, 강민정, 장금주, 이홍섭(2012),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실태분석," **회계저널**, 21(3), 307-342.

윤순석, 김효진, 박민경(2015), "연구논문 : IFRS 최초채택일에 간주원가 선택기업의 특성과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4(5), 1-34.

최보람, 최기호(2011), "K-IFRS 적용에 따른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사례," **회계저널**, 20(2), 423-444.

최종서, 공경태(2014), "K-IFRS 도입 이후 감가상각방법 변경기업의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39(6), 267-302.

An Analysis on the Changes in Depreciation Assumptions on Fixed Assets after IFRS Adoption

Sung Whan Park* · Seun Young Park**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the elements of the accounting assumptions pertaining to the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depreciation unit, depreciation method and useful life), which are one of the many areas where K-IFRS and K-GAAP tend to differ. Also, this study provides the ways to improve the disclosures related to depreciation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D Industrial Co., LTD.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irms have decreased the number of depreciation unit after the adoption of K-IFRS, and their depreciation methods have all changed from the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to the straight-line method. Useful life is disclosed in ranges rather than specific points, making it difficult to see the exact useful life. And overall, depreciation expenses are made to decrease by increasing the useful life of depreciable assets. Second, it is likely that managers make the decisions to decrease the depreciation expenses by increasing the useful life instead when the changes in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alone cannot decrease the depreciation expenses. Third, corporate case study shows that those with poor profitability and low financial stability are likely to decrease the depreciation expenses in order to manage their financial structures and performances at the IFRS implementation stage.

Our findings suggest the needs for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or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o encourage firms to improve their disclosures by giving a practical disclosure guide or illustrating the best practices.

Key Wo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ixed Assets. Depreciation Unit, Depreciation Method, Useful Life

* Professor, Dept. of Account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psh630@hanbat.ac.kr), First Author
** Ph. D.,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ersity(sypark13@gmail.com), Corresponding Author